

건설업계 간담회 ②

건설업계 의견 공개적 수렴, 반영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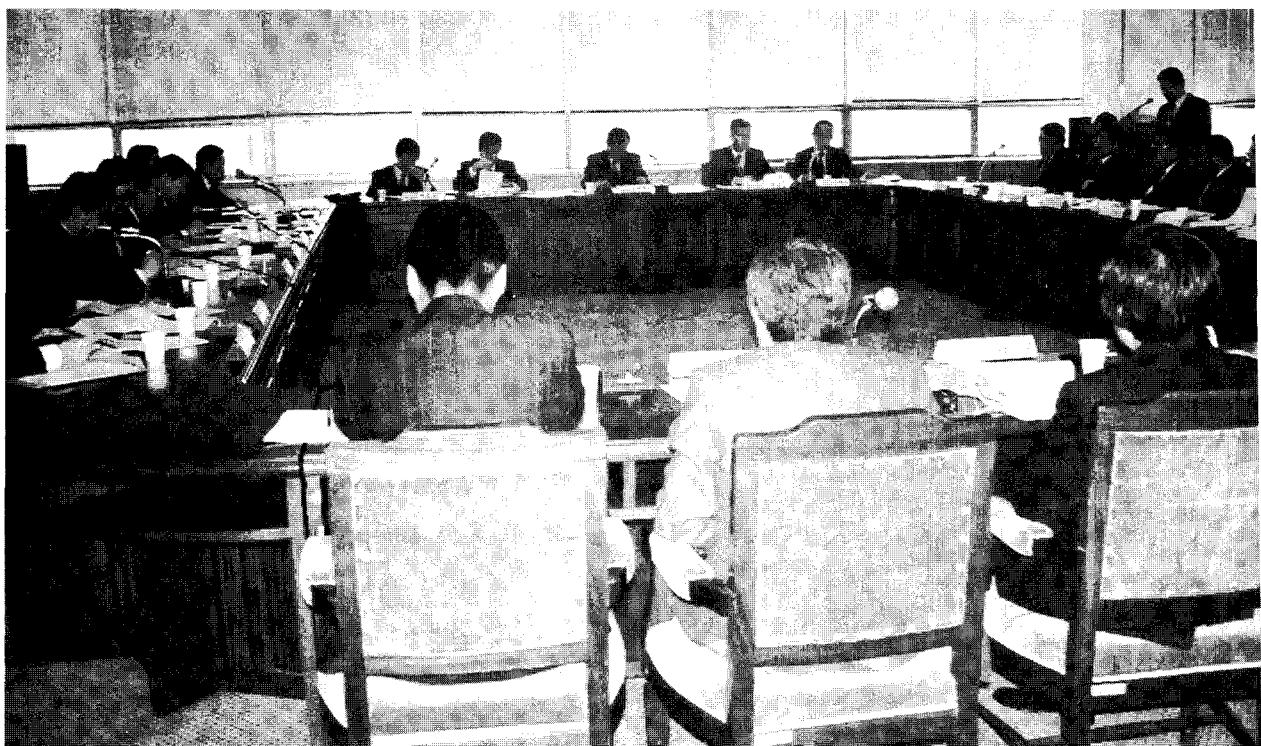
건설부는 오는 94년 해외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비코자 건설업계의 건의등을 종합 검토키 위해 공청회 및 간담회 등 공개적이고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건설업법 개정에 관한 정부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가 건설업계의 현안문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11월 12일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마련한 제2차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공사협회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공사협회는 전문건설공사에 있어서 당해 공사금액 이상의 도급한도액 적용업체가 없는 경우 당해 업종의 상위 10위 이내의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급제도의 개선과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를 전문공종별로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대한설비공사협회를 비롯한 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가 건설부에 건의한 내용이다.

—건설부, 3개 건설단체와의 간담회서 밝혀—





대한설비공사협회

대한설비공사협회

▲전문건설공사 발주금액의 대형화로 도급한도액 해당 업체가 없을 경우에도 전문건설 한도액 상위권 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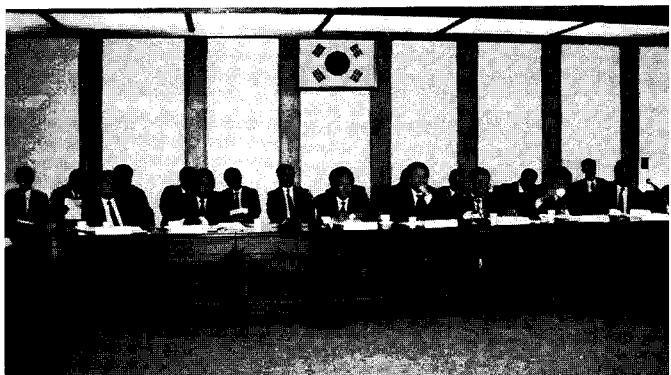
현행 건설업법에는 일반 종합건설 발주의 경우 당해 공사금액 이상의 도급한도액 적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종의 최고 한도액 10위 이내의 건설업자 중에서 발주자가 정하는 건설업자가 도급 받도록(건설업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적용하고 있다.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발주공사 금액이상의 한도액을 가진 전문건설업자가 없는 경우 그 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도록 규정(법 제1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고 있는 바, 이는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수주·시공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전문건설업계 육성 차원에서도 이 제도를 시정하여 해당 전문건설업종의 최고한도액 순위 10위 이내의 전문건설업자 중에서 도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을 건의 했다.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전문공종별로 재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현행법상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는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전문공사 일자라도 세부공종별로 전문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전문화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면허의 실시 및 간신주기 연장

최근 경제규제완화 실무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체질 강화를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면허주기의 단축문제는 신규업체의 양산과 이에따른 과당경쟁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데다 기술인력 스카웃 현상이 보다 심화될 것이며 중소업체의 대량 도산사태까지 빚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빈번한 면허갱신은 실익에 비하여 업계의 비용부담 및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면허 실시 및 간신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건축업 신설방침 반대

건설부가 부실시공 및 면허대여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건축업신설방침은 중소규모의 건축공

사업자는 경영기반을 상실하게 되며 양기업군 간에 도급분쟁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정기적인 면허실시로 건축공사업자가 계속 증가되면 그중에는 업체 규모에 따라 소규모건축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기업군이 자생적으로 분포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규모건축업 등록제 시행과 같은 결과가 될 것이다. 또 건설부가 우려하는 부실공사의 해소문제는 감리제도의 개선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면허의 양산으로 불법시공을 양성화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건축허가 규제등에 따른 업계의 애로해소 건의

현행의 상업용 건축은 연립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 기존건축물의 철거를 수반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은 공종별로 선별하여 규제를 해제하거나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 수요 건축공사 신축유보 및 건축공사 중단조치를 해제할 것을 건의한다.

위와같은 행정조치로 공공공사의 착공지연 또는 시공기간이 연장될 경우 설비보상 및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적인 시공이 가능토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관련단체 협의체 구성

급변하는 국내외 건설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등 건설관련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건설인력난 및 건자재 수급난 등 당면과제 해소방안 협의와 정부의 건설정책에 관한 업계의 건의사항, 장기적인 안목의 건설관련제도 개선방

향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건설관련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최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결정 및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가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므로 타산업보다 하도급 의존도가 높아서 실제로는 50% 이상이 하도급에 의해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적법한 하도급 비율이 20% 내외로 저조한 점에서 볼 때 불법하도급이 성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건설업면허 없이도 시공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가 2백평 미만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 대형아파트를 제외한 상당부분의 국민주거 시설이 사실상 무면허업자에게 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하는 사례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성행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이러한 무면허업자의 성행을 방지해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는 부대입찰제 및 공종별로 일정비율을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협회의 사실조사권(제한적) 기능부여와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개정으로 감독관에게 불법하도급 단속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주택사업자에 대한 무면허 하도급 금지 제도화 및 소규모 건축업을 전문업종으로 신설할 것 등을 건의 했다.

▲건설업 면허주기 단축 문제

최근 경제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서 현재 3년으로 되어있는 건설업면허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한다는 발표가 있자 전문건설업계는 큰 충격 휩싸이고 있다.

과거 15년 이상 동안 동결되어온 건설업면허를 지난89년 단 1회 개방했는데도 업체난립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건설업계의 수주질서가 무너지고 상당수의 업체가 도산과 덤펑투찰로 부실시공등 각종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의 제도하에서도 건설업 면허주기가 92년 4/4분기로 다가온 만큼 면허주기 단축문제는 지금 당장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없으며 내년도에 신규면허를 실시한 후, 그 효과 및 파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박병선 건설부
건설경제국장

건설부의 답변

3개 건설단체의 견의를 들은 후 건설부는 견의 내용이 주로 건설업법 개정사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업법의 불합리한 조항은 하루빨리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건설업법 개정에 있어서 비공개적으로 해왔던 것을 이번 개정작업에는 업계의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민주적인 법 개정이 단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사협회가 견의한 “전문건설공사 발주 금액의 해당업체가 없을 경우 전문건설 한도액 상위권 업체가 도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 견의”에 대해 건설부는 전문건설업종의 육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는 법개정상의 문제이므로 앞으로 법개정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주 건설부
회계과장

또한 “전문공종의 재하도급 견의”는 전문화·세분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전문분야의 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법 개정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밖에 공사대금의 물가연동제, 선금금 등 현행 제도상으로 보장돼있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

도록 조치하는 한편 건설하도급 거래질서의 확립 및 하도급 계열화를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 발표 요지

건설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건설부는 건설업계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건설공사 하도급 질서 확립 방안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일까지 건설부 산하 5개 지방청 및 4개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171개사 553건)를 조사한 결과 115개사의 171건을 적발했는데 위반내용은 주로 무면허 하도급, 하도급 통지 불이행, 의무하도급 불이행, 도급한도액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건설업법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고 향후 건설하도급 질서확립을 위하여 매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손광조 건설부
산업과장

건설부는 또 건설하도급 계열화를 추진하기에 앞서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계열화 정착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건설부는 이 설문조사를 분석하는 대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전체 일반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하도급 계열화 실시를 권고할 방침이다.

UR협상 진행현황 및 대응방안

건설분야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제안내용은 ▲일반

건설업 '94년 1월부터 100% 투자 허용, '95년 1월부터 지사설치 허용 ▲전문건설업은 '96년 1월부터 100% 투자 허용, '98년 1월부터 지사설치 허용 ▲건축사업은 '96년 1월부터 국내 법인과 공동계약이 가능도록 한 것이다.



이종호 해외협력과장

또 한국이 각 나라에 요구한 내용은 ▲미국에는 Surety Bond의 요건 완화, 미국인 우대정책 철폐, 현지법인 지사원의 비자발급 기간 단축 ▲일본에는 미·일 구조조정협의 결과 미국 업체에 부여하고 있는 동등혜택 부여 ▲호주에는 건설분야도 협상에 포함시킬 것 등이다.

건설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이동 문제는 지난 10월 19일 관련부처 회의 결과 미국, 카나다 등이 제의한 기본인력 (Manager, Executive, Specialist)은 다자간 약속에 의해서 자유화하고 기타 범주의 인력은 양허협상에 의해서 업종별로 양허범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양허협상 계획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1차가 열렸고 2차 협상은 12월 8일 열릴 계획이다.

건설부는 앞으로 서비스 협상이 양허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협상결과가 실질적으로 국내 건설업의 개방과 직결되므로 건설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참여로 건설분야에 관한한 건설부의 책임 하에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건설서비스에 있어서 정부 및 공공부문 공사는 GNS와 별도로 GATT/정부조달협정의 범위 확장협상에 포함되므로 이 부문 협상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키로 했다.



박상재 건설부
건설경제과장

대응방안은 양허협상시 한국의 입장은 미·일 등 선진국 진출 장애요인 제거에 노력하고 국내산업에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방일정을 양허협상에 반영 시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한다.

개방일정 계획 및 개방방법은 경쟁력보유순위에 따라 개방일정 및 개방순위를 결정하되 상호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방일정을 너무 늦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업 종	개 방 방 법	개방시기(안)
· 토목·건축업	1단계 : 현행유지 (합작투자조건)	'93까지
	2단계 : 단독투자, 면허취득허용 (현지법인 형태)	'94부터 (지사형태 '96)
· 특수·전문· 전기·전기통 신 소방설비	1단계 : 현행유지 (합작투자조건)	'95까지
	2단계 : 면허취득 (현지법인 형태)	'96부터 (지사형태 '98)
	· 국내법인 건축사사무소와 공동계약 · 국내법인 건축사사무소와 합작투자 ·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설립 · 단독으로 감리전문업 가능화 (현지법인)	'96부터 '98부터 2000년부터 '96부터 (지사형태 '98)
· 건축사업		
· 감리전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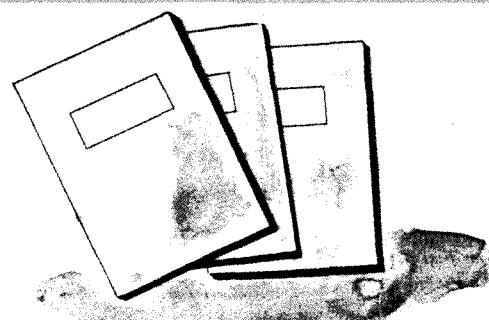
개방에 따른 국내시장 보호방안은 ▲150억원 미만의 토목·건축공사에 대한 외국업체 참여 제한으로 지방 및 중소건설업체 보호(건설업법 개정) ▲1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국내업체와 공동도급에 의하도록 유도(건설업법 개정) ▲연면적(총시설면적) 2만㎡ 이하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대한 외국 건축사 참여 제한(건축사법 개정)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외국 감리업체의 참여 제한(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외국업체의 도급한도액 산정시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사의 자본

금 대신 지산의 영업기금 적용(건설업법 시행령 개정)
▲국내건축사와 공동 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사무소
국내진출 허용('96~'97 건축사법 개정) ▲외국업체
가 공사 수주시 공사중 일정부분 이상을 한국의 일반,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의무화(건설업법 개정)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기자재 사용 의무화(건설업법 개정)
등으로 한다.

선급금지급 의무이행 건의에 대한 조치

건설업계가 올 상반기중 선급금 수령실태를 분석한

결과 예산회계법령상 반드시 지급토록 하고 있는 최소
한의 선급금 지급률(20~30%)에도 못미치고 있어 업
계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발주공사에
대하여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선급금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해달라고 건설부에 건의한 것을 건설부는 지난
10월 30일자로 건설부산하의 지방국토관리청 및 4개공사에 이행지시를 통보했다.



조달청 제정
1991년도

설비공사단위당가격표

(舊 設備工事一位代價表)

大韓設備工事協會

문의 ☎ 243-7638~9